#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9.29, 주택관리번호 : 2022000671)

## 1. 건설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행복주택 435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장소>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접수 시 체온측정을 진행하며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9.30~2003.09.2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09.29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인터넷,모바일)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 소득, 자산) |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 | 당첨자 발표 | → | 계약체결 |
|---|---|---|---|---|---|---|---|---|---|---|---|---|
| ('22.10.11~20) | | (11.02) | | (11.07~11.11) | | | | | | ('23.03.10) | | ('23.03.22~24) |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임대대상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 세대 당 계약면적(㎡) | | | |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 합계 | | | |
| | | 우선 공급 (218) | 일반 공급 (217)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 |
| 21A | 대학생 | 36 | 72 | 21.60 | 13.7958 | 3.0601 | 9.0202 | 47.4761 | 6 | 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 난방 | '23.09 |
| | 청년(소득無) | 36 | | | | | | | | | |
| | 청년(소득有) | | | | | | | | | | |
| 26A | 주거급여 수급자 | 22 | 22 | 26.76 | 16.5192 | 3.7912 | 11.1750 | 58.2454 | 20 | |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22 | 22 | | | | | | | | |
| 44A | 고령자 | 10 | 10 | 44.47 | 26.0629 | 6.3003 | 18.5707 | 95.4039 | 10~20 | | |
| | 주거급여 수급자 | 10 | 10 | | | | | | | |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82 | 81 | | | | | | | | |

### ■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 |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 | 임대보증금(원) | | | 월 임대료(원) | | | 임대 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 | 계 | 계약금 (5%) | 잔금 (95%) | | | | | |
| 21A | 대학생 | **19,108,000** | 955,400 | 18,152,600 | **106,680** | (+) | - | - | - |
| | | | | | | (-) | 15,000,000 | 4,108,000 | 137,930 |
| | 청년(소득無) | **19,108,000** | 955,400 | 18,152,600 | **106,680** | (+) | - | - | - |
| | | | | | | (-) | 15,000,000 | 4,108,000 | 137,930 |
| | 청년(소득有) | **20,232,000** | 1,011,600 | 19,220,400 | **112,960** | (+) | - | - | - |
| | | | | | | (-) | 16,000,000 | 4,232,000 | 146,290 |
| 26A | 주거급여 수급자 | **20,520,000** | 1,026,000 | 19,494,000 | **114,570** | (+) | 7,000,000 | 27,520,000 | 79,570 |
| | | | | | | (-) | 16,000,000 | 4,520,000 | 147,90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25,992,000** | 1,299,600 | 24,692,400 | **145,120** | (+) | 2,000,000 | 27,992,000 | 135,120 |
| | | | | | | (-) | 21,000,000 | 4,992,000 | 188,870 |
| 44A | 고령자 | **41,268,000** | 2,063,400 | 39,204,600 | **230,410** | (+) | 27,000,000 | 68,268,000 | 95,410 |
| | | | | | | (-) | 34,000,000 | 7,268,000 | 301,240 |
| | 주거급여 수급자 | **32,580,000** | 1,629,000 | 30,951,000 | **181,900** | (+) | 21,000,000 | 53,580,000 | 76,900 |
| | | | | | | (-) | 26,000,000 | 6,580,000 | 236,060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3,440,000** | 2,172,000 | 41,268,000 | **242,540** | (+) | 29,000,000 | 72,440,000 | 97,540 |
| | | | | | | (-) | 35,000,000 | 8,440,000 | 315,450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가스쿡탑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타 평형 미설치)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3년 9월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3-1. 대학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합니다.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br>• 신청자의 부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br>• 신청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순위**

| |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 또는 연접지역(횡성군,영월군,평창군,제천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대학생)** 원주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대학생 | 부모 모두 원주시 및 연접지역(횡성군,영월군,평창군,제천시)외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원주시외 연접지역(횡성군,영월군,평창군,제천시)에 거주<br>**(※ 단, 부모 모두 원주시 외에 거주해야 함)** |
| 취업준비생 | 원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원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 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배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 21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3-2. 청년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9.30~2003.09.29)**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세대원(본인)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구분 | 해당세대 | 비고 |
|---|---|---|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 신청자 • 신청자 직계존속<br>•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 • 신청자 | 신청자만을 세대원으로 간주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 |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 또는 연접지역(횡성군,영월군,평창군,제천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원주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원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원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인터넷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관리번호) 2022000671 |
| **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배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21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 맞벌이 신혼부부 | |
|---|---|---|---|---|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6,297,681원 이하 | 13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7,702,279원 이하 | 120%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8,640,971원 이하 | 120%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8,791,286원 이하 | 120%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9,335,790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의 해당세대란**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 신청자 |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 |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원주시 또는 연접지역(횡성군,영월군,평창군,제천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강원도, 단 1순위 지역 제외)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입니다.**
-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원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원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인터넷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 **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배점 → 원주시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추첨 |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 3-4.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 신청자 |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① 신청자 나이 |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br>~만 75세 미만 | 만 70세 미만<br>~만 65세 이상 |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원주시에 5년 이상 거주 | - | 원주시에 5년 미만 거주 |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배점 → 원주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원주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 3-5.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 신청자 |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원주시에 5년 이상 거주 | 원주시에 5년 미만 거주 |
|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배점 → 원주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 |
| ※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br><br>'22.10.11(화) 10:00<br>~'22.10.20(목) 17:00<br>※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br>(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br><br>※ 현장접수 신청<br>'22.10.13(목) 10:00<br>~'22.10.14(금) 16:00<br>(점심시간 12:00~13:00 제외)<br><br>※ 현장접수 장소<br>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3층<br>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 '22.11.02(수)<br>17:00 이후<br><br>LH 청약센터<br>(apply.lh.or.kr)<br>↓<br>인터넷청약<br>↓<br>청약결과조회<br>↓<br>"서류제출대상자조회"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br><br>'22.11.07(월) 10:00<br>~'22.11.11(금)17:00<br><br>※ 인터넷접수<br>※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br><br>※ 등기우편접수<br>(보내실 곳)<br>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br>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br>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담당자 | '23.03.10(금)<br>17:00이후<br><br>(장소)<br>*LH 청약센터<br>(apply.lh.or.kr)<br>* ARS(1661-7700)<br><br>※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 전자계약<br>'23.03.22(수) 09:00<br>~'23.03.24(금) 17:00<br><br>※ 현장계약(기간)<br>'23.03.22(수) 10:00<br>~'23.03.24(금) 16:00<br>(점심시간 12:00~13:00 제외)<br><br>※ 현장계약 장소<br>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3층<br>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

- **청약접수는**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22.10.20(목)은 17:00 전까지)**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2.11.02(수)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 안 내 사 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 6단계 | → | 7단계 | → | 8단계 |
|---|---|---|---|---|---|---|---|---|---|---|---|---|---|---|
| 인증서 로그인 | | 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 계층 및 우선/일반 공급 선택 |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 청약신청 정보 작성 | | 신청내용 확인 | | 청약신청서 제출 |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현장 청약 방법

▪ **현장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이나 기관추천 대상자에 한함**

▪ 현장 신청일정 : '22.10.13(목) ~ 10.14(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 신청장소 :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농협하나로마트 3층)**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신청서류(15P~19P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원주시)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 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현장접수처 방문 시 체온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10.11.(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10.20.(목)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마감일인 '22.10.20(목)은 17:00까지임을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10.11.(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10.20.(목)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마감일인 '22.10.20(목)은 17:00까지임을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방법

○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2.11.02(수)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내에 해당서류를 인터넷접수(전자파일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① 인터넷 서류제출방법(전자파일 업로드)**

○ 인터넷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제출 이용시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인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접수 마감일인 '22.11.11(금)은 인터넷 접수가 17:00에 마감되므로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 필요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우편 서류접수**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2.11.1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4365)**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접수자의 경우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br>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br>② 본인(신청자) 도장<br>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br>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br>*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br>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서식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해당 공고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상세내용 | 서식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br>*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br>*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br>*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br>•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br>※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br>*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br>*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br>**※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br>*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br>※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r>•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br>•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br>•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r>**<아래 해당자만 제출>**<br>•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br>•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대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br>• 대학생 계층(대학생)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br>•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br>**(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br>•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br>**※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br>•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br>•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1통 |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공급대상 | | 제출서류 | 발급처 |
|---|---|---|---|
| 대학생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br>-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br>-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서식2. 복학예정 확인서)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br>•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대학 |
|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대학/학교 |
| | 해당자만 제출 |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br>-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br>-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행정복지센터 |
| 청년계층 | 청년<br>(만19세이상<br>~<br>만39세이하)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연금공단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b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연금공단 등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br>•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지방고용노동청 |
| |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예술인]**<br>•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 |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br>-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br>※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직장 |

| | | | |
|---|---|---|---|
| |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br><br>-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br>-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br>해당 직장(세무서) |
| | |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br>-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br>•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br>-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해당 학교 |
| 신혼부부계층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br>•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예비<br>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서식3-1. 신청 확인서)<br>•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서식3-2.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br>•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br>•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br>※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제출(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무효 처리) | - |
| | |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br>-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br>• **맞벌이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해당자만<br>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br><b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br><br>-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br>※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공단 등<br><br>해당 직장 |
| |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br><b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br>·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br>·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br>해당 직장(세무서) |

| | | | |
|---|---|---|---|
|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br>-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 |
| 고령자 | |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br>-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br>-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br>-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br>-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br>-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행정복지센터<br>국가보훈처(지청) |
| 주거급여수급자 |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br>-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br>-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br>-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br>-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br>-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br>-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br>-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보훈처(지청)<br>행정복지센터 |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2023.03.10(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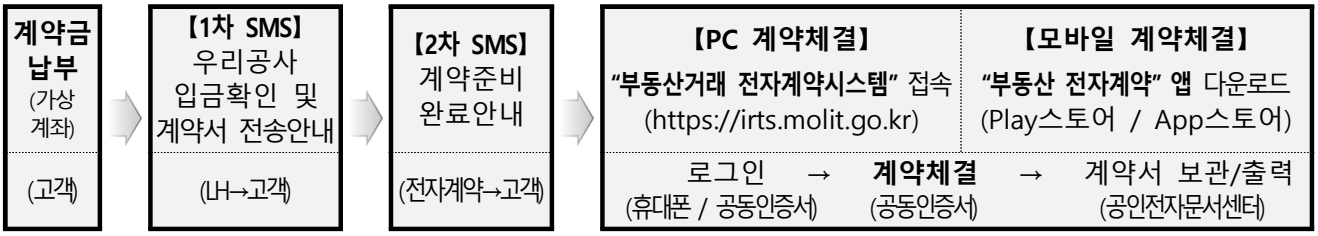
###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023.03.22.(수) 09:00 ~ 2023.03.24.(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기간 : 2023.03.22.(수) 10:00 ~ 2023.03.24.(금) 16:00]**
  - **당첨자 중 현장계약 체결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체결 장소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26,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

|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br>•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br>•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br>•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br>-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br>• 배우자 외의 자<br>-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br>-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br>•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br>•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br>•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br>•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br>*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br>•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 | | |
|---|---|---|
| |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br>-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r>•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br>아래의 경우를 제외함<br>-「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br>-「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br>•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br>•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br>•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br>•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br>•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br>•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 **기타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br>•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br>•「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br>•「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br>•「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br>•「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br>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br>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br>•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br>• 공공기관 대출금<br>•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br>•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br>•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r>•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br>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br>-「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br>-「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br>-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b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

| | | | | |
|---|---|---|---|---|
| | | | | 월평균 보수액<b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br>(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br>/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br>-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br>-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br>-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br>-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br>*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b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 사업자등록증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 - 지방세정 자료 |

| | | | | |
|---|---|---|---|---|
| | | 및<br>주택 |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br>-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br>-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br>-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 지방세정 시가표준액<br>- 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br>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br>(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br>-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br>-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br>(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 지방세정 시가표준액<br>- 국토부 차적정보 |

## 8.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br>및<br>재청약에<br>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r>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br>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br>
■ 재청약 기준<br>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br>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br>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br>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br>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br>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br>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br>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br>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br>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br>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br>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d></tr>
</table>

<table>
<tr><td></td><td>*「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td></tr>
<tr><td>신청자격</td><td>•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br>*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br>•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br>•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br>•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br>*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td></tr>
<tr><td>신청 서류</td><td>•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br>•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br>•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br>•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br>*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td></tr>
<tr><td>지구 및 단지특성</td><td>• 계약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br>•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br>•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중 일부 과대한 크기의 경우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td></tr>
</table>

| | |
|---|---|
| | 할 수 있습니다.<br>• 또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br>•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경량석고보드로 시공되어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br>•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br>• 북측 도로와 단지 진입로 차이는 1m이내입니다.<br>• 단지 동측 2M 내로 단지가 높고 경관녹지 조성되어 있음. 단차발생은 조경석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단지 남측차이는 1m 이내로 경관녹지 조성되어 있습니다.<br>• 단지 북측 주상복합, 서측 초등학교, 동측 공공청사 부지계획되어 있습니다.<br>•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601동과 602동 사이 레벨이 동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br>• 승강기 인접 세대는 승강기 작동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단지 북측 주상복합, 서측 초등학교, 동측 공공청사 부지조성으로 입주 후 단지 내 공사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용 차량이 인근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인근 택지지구 조성공사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601동 1층 세대창고, 공용주방, 세탁실, 2층 체력단련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br>• 602동 1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청년카페, 2층 세대창고 등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br>• 부속동(경비실 1개소, 근린생활시설(1F), 보육시설(어린이집1F, 생활문화센터2F), 커뮤니티센터(602동 1F), 커뮤니티마당 2개소,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가 단지 내 위치하여 있습니다.<br>•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주출입구 등에 보안을 위한 CCTV가 설치됩니다.<br>• 아파트 승강기는 6대(601동 3대, 602동 3대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에 따라 승강로 및 권상기 인접세대는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동별 승강기 인승, 속도는 관련 법률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되며,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량 충전기가 설치됩니다.<b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입니다.<br>• 각 동 1F층 출입구 인근에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되며, 601동 1F, 602동 1~2F 세대창고가 위치하여 있습니다.<br>• 세대현관문 주위에 가스미터기가 설치될 경우 일부 타입의 경우 세대현관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1종 환기시스템(기계식 환기설비, HEPA필터 적용)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주방에는 주방용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됩니다.<br>• 공용PD내 통합거치대 방식으로 원격검침 수도미터기가 설치됩니다.<br>• 주방 상부장에 레인지후드 덕트로 인하여 수납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br>• 싱크대 하부는 분배기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각 실별로 온도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br>• 행복주택(21A)의 경우만 가스쿡탑(2구형), 소형냉장고(130~160L)가 설치됩니다.<br>• 실외기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실외기 규격에 따라 일부 실외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실외기실 문짝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br>• 세탁기 후면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보일러 수리시 세탁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주방 공용배기 방식을 적용하여 아파트 옥상에 공용배기팬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

| | |
|---|---|
| | 소음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화재예방을 위한 분말소화기 지급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됩니다.<br>• 본 단지는 도시가스(LNG) 공급지구이며, 개별보일러가 설치됩니다.<br>•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보관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br>•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br>•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주의 요함)<br>•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br>•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br>•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br>•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마감자재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청약·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는 지하주차장 부근에 설치되며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무궁화 위성안테나 지상파 방송안테나는 602동 옥상층에 설치하며 2차 전파조사시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br>•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br>•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으니, 한파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br>•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br>•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br>•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br>*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br>•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br>•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br>•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br>•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br>•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br>•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br>•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br>*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br>•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br>•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br>•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br>•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br>•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소음관련등급 | 경량충격음 | | 500세대 이하로 주택성능등급 의무적용 아님 |
| | 중량충격음 | | |
|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
|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외부소음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
| 구조관련등급 | 가변성 | | |
| | 수리용이성 | 전용부분 |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등급 | 조경(외부환경) | 생태면적율 | |
| | | 자연지반 녹지율 | |
| | 세대내 일조확보율 |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
| | 에너지절약 | 에너지성능 | |
| 생활환경등급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 보행자도로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
| |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
| | 교통부하저감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
|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온열환경 |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 콘텐츠 | |
|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타당성 | |
| |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 | | 제연설비 |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 수평피난거리 |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 피난설비 |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 용 | 바닥(층간바닥) | 적 용 |
| 외벽(직접면)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스위치 | 적 용 |
| 외벽(간접면)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미적용 |
| 창호(간접면) | 적 용 | 고효율LED | 적 용 |
| 지붕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바닥(간접면)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 고효율설비(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난방·급탕·급수 펌프) | | | 적 용 |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
| A-6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 - |

##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현관 | 출입문 상단에 자석감지기 설치 | 전체세대 |
| |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 거실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 |
| |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 전체세대 |
| 부엌 | 좌식 싱크대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
| 욕실 |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 |
| |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
| 침실 |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 청각장애인 |
| 기타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구분 | 설치항목 | | |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욕실 (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br>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br>(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 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거실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단,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br>(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br>•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b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br>-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br>-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br>·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29.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